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6.11.7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10월 31일 마포구청장제출
나. 회부일자 : 1996년 10월 31일
다. 상정일자 : 제41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('96.11.7)상정, 심사, 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
□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문엽승
가. 개정이유
본격 자치시대의 도래로 행정수요의 증대와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의 강화와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 총괄 조정기능을 위해 국장급(4급) 기획실을 신설하고, 자동차 경정비업소 등록에 대비하여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를 신설,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,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.
나. 주요개정골자
구본청 정원의 총수 "937명"을 2명 증원하여 "939명"으로 함(안 제2조 제1호)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○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 정원의 총수 937명을 2명 증원하여 93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장급으로 신설되는 기획실장과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가 신설됨에 따라 계장요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됨.
○금번 순수증원되는 2명을 포함한 마포구 총 공무원수는 구 본청 939명, 동사무소 469명, 보건소 76명, 구의회 29명 등 총 1,513명이 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방범원은 총 정원 책정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본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방범원 135명을 제외한 마포구 총 지방공무원수는 1,378명이 되겠으며, 동 시행규칙 별표1의 제2호 자치구 정원산식에 의한 마포구 총 정원의 범위가 현재 1,411명으로 앞으로 증원 가능한 여유정원은 33명이 되겠음.
4. 질의 및 답변요지
○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방범원을 제외한 구, 동 현원은 몇 명인가?
○답변요지(문엽승 총무과장) : 구 본청은 방범원을 제외한 824명, 동은 460명, 보건소 70명, 구의회사무국 29명으로 총 1,518명임.
○질의요지(이인구 위원) : 새로 신설되는 기획실장실에 여직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가?
○답변요지(문엽승 총무과장) : 아직까지는 계획된 바 없음.
○질의요지(이인구 위원) : 신설되는 자동차 정비계 소속 직원 3명은 충원 계획은?
○답변요지(문엽승 총무과장) : 새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, 기존 자동차 정비 관련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계 배치할 계획임.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121

제출일자 : 1996. 11. 7.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본격 자치시대의 도래로 행정수요의 증대와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의 강화와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 총괄 조정 기능을 위해 국장급(4급) 기획실을 신설하고, 자동차경정비업소 등록에 대비하여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를 신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.
2. 주요골자
구본청 정원의 총수 "937"명을 2명 증원하여 "939명"으로 함(안 제2조 제1호)
3. 개정근거

○지방자치법(1995.12.29 법률 제5,069호) 제5조, 제103조
○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(1995.12.28 대통령령 제14,841호)제13조, 제21조
4. 조례안 : 별첨
5. 예산조치 : 필요
첨부 : 1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(조례)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제1항중 "937명"을 "939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마포구의 본청·직속기관 및 동에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… …… …… …… …… ……
1. 구본청(구청) : 937명	1. …… : 939명
2.(생 략)	2.(현행과 같음)
3.(생 략)	3.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'96. 11. 4.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10.24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'96.10.25.
다. 상정일자 : 제41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('96.11.4)상정, 심사, 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정수 건설관리과장)
가. 제안이유
○도로법시행령(1996.7.1 대통령령 제 15,100호)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·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나. 주요골자
○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"건설교통부 표준품셈"을 "건설표준품셈"으로 변경함.
○점용료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미만에서 5,000원미만으로 확대.
○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 환급시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방지함.
○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 일부 개정(안 별표1 참조)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박관수 전문위원)
○동개정 조례안은 1996.7.1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로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동조례 시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.
○안 제7조 제1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의 범위가 현행 500원 미만에서 5,000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의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.
○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의 세입구분이 삭제되어 있으나, 이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수입으로 귀속되고,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2에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○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현행 제1호 및 제8호에서 정율제로 규정되어 있는 작업구(맨홀), 전력구, 통신구,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 방식을 제2호에 규정하여 정액제로 개정하므로서 점용료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며, 정율제의 점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현행 공시지가에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